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검 토 보 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12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총칙규정	3
2.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획	7
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	9
4. 실태조사	11
5.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12
6. 사용장려와 우선구매 등	14
7.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과 조세감면 등	1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24.
3. 회 부 일 : 2025. 11. 25.

II.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강화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이러한 플라스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고, 퇴비화, 자연토양 및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생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제품을 생산 등 산업기반이 형성 중에 있으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촉진, 재정적·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사용 장려, 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 등 산업진흥을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조건, 퇴비화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심의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에게 사용 장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조세의 감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부터 제15조까지).
- 사.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인증위반 관련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

IV. 검토의견

1. 총칙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증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바이오매스 또는 석유계 물질로 제조하며, 일정한 분해 조건에서 미생물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으로 최종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이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연구·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분해 조건”이란 온도, 습도, 분해 기간 등 환경 상태를 고려한 퇴비화 조건, 자연토양 조건, 해양조건 등을 말한다.
4. “퇴비화”란 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해시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혐기성·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해시켜 퇴비를 생산하거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활동
6.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7. “유기성 폐자원”이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종류, 제1항제3호의 분해조건 등에 대

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정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서 동 제정안의 목적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증진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규정하는 한편,

제정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또는 석유계 물질로 제조되어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물·이산화탄소·메탄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정의하는 등 제정안 중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현재 석유화학 관련기업을 중심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기술개발과 시제품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수익분야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규율되는 환경산업¹⁾의 일종으로 산업부 소관으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관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예산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통해 진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별도 법률 신설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산업진흥법에 공통되는 내용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임.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다만 행정안전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기획예산처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과 관련하여 동 제정안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과 관련한 특별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2.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획 (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발전 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5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해 5년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함.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이 5년 주기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과 관련하여 별도 법률을 입법할 실익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기본계획 등 이하 제정안 내용 전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 (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 ①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 및 촉진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6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두도록 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유관 부처의 의견과 전후방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들어 위원회 설치에 동의하는 입장인 반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가 금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²⁾ 산업통상부 내 정책자문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실태조사 (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통계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자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7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함.

기본계획 수립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점, 「연구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산업진흥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례에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부도 실태조사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5.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안 제8조·제9조)

제 정 안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8조는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하게 하고,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를 수행하게 하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경제성 확보에 연구개발이 필요한 점, 「에너지저장산업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산업진흥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례에 기술개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관련 기

술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부도 연구개발 촉진 및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다음으로 제정안 제9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게 하는 것임.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성격상 국제 환경규제 기준 변화를 즉시 파악하고 기준 제정 및 개정에 국내 산업계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 있는 점, 「연구산업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산업진흥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례에 국제동향 파악과 국제협력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6. 사용장려와 우선구매 등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 정 안
제10조(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장려)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용 후 유실 또는 통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2. 음식물 등과 혼합되거나 분리하기 어려워 재사용·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품 및 포장재 제11조(생분해성 플라스틱 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12조(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품질표지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품질표지(이하 “품질표지”라 한다)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표지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표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품질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

키는 경우

3. 그 밖에 품질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품질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 제10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가 사용 후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등에 대하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미생물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 후 통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등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부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의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있으므로³⁾, 동 규정과의 관계를 고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11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게 하는 것임.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에 환경친화적 성격이 있는 점, 제정안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책무가 부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부도 국가 등에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우선 구매·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⁴⁾⁵⁾, 동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제정안 제12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품질표시 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생분해성 플라스틱제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품질표시 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므로⁶⁾, 동 인증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7.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과 조세감면 등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 정 안
제1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제14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3조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재·기기 등으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의 적시성 확보가 필요한 점,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자재·기기 등에 대

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게 하는 점⁷⁾을 들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관세청은 연구목적 상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 허용되고 있어서⁸⁾, 「관세법」 규정 외에 개별법 상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14조는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자에 대해 조세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조기정착이 필요한 점,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산업육성 관련 입법례에 유사조항이 있는 점을 들어 조세감면 조항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세 및 지방세 특례는 「조세특례제

7) 생명공학육성법 제26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8)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규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개별법에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각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15조는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기술집약적 성격과 미래산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